

교직원 포상 규정

- 제 정 : 1998. 03. 01
- 개 정 : 2011. 10. 01
- 개 정 : 2017. 06. 0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 교직원에게 수여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포상대상) 포상은 본교 교직원(용역 포함)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10년 이상 성실히 근속하여 타에 모범이 된 자
2. 학사업무의 능률성과 효과성 향상에 현저히 기여하여 학교 명예를 향상 시킨 공로가 있는 자
3. 사고 및 재해의 미연방지 기타 재산손실을 사전에 예방한 공로가 현저한 자
4. 기타 본교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및 특별 사유 해당자

제3조(포상의 종류) ① 포상의 종류는 근속포상, 공로포상, 자랑스러운 수원대인 포상, 특별포상 으로 한다.

1. 근속포상 : 전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하며, 10년 근속, 20년 근속, 30년 근속, 40년 근속으로 구분하여 시행
2. 공로포상 : 전조 제2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
3. 자랑스러운 수원대인 포상 : 전조 제2조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
4. 특별포상 : 전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

제4조(포상방법) ① 포상은 총장이 행한다.

② 근속포상은 10년을 단위로 하여 계속 포상할 수 있으며 상장과 다음의 부상을 수여한다.

1. 10년 : 상품권 50만원 상당
2. 20년 : 상품권 100만원 상당
3. 30년 : 상품권 150만원 상당
4. 40년 : 상품권 200만원 상당

③ 공로포상은 공로패와 상품권 30만원 상당의 금액 범위 내 에서 결정하되 생략할 수도 있다. 단, 수상자가 직원인 경우에는 포상 평정에 있어서 이를 가점(加點)으로 반영한다.

④ 자랑스러운 수원대인 포상은 상장과, 개인 또는 단체별로 기여 실적에 따른 포상금액을 따로 결정 지급한다.

⑤ 특별포상은 「성과급 지급 및 운영지침」에 따라 결정 지급 한다. 단, 수상자가 직원인 경우라도 포상 평정에 있어서 이를 가점(加點)으로 반영하지는 않는다.

제5조(포상의 시기) ① 근속포상과 공로포상은 매년 개교기념일(9월 25일)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특수 공로 포상과 정년으로 퇴임하는 자가 퇴임일 현재 근속포상 대상 년수에 도달한 경우 또는 특수한 공적이 인정된 경우에는 수시 포상할 수 있다.

② 자랑스러운 수원대인 포상은 매년 말 본교에 기여한 실적을 심사하여 포상한다.

③ 특별포상은 사안에 발생에 따라 수시로 포상한다.

제6조(포상대상자 추천) ① 근속포상 및 공로포상은 소속 부서장이 그 후보자를 추천하며, 포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『별지서식 제1호』의 추천서에 공적사항을 기입하여 매년 8월 20일까지(수시포상분은 수시) 교원은 교무처장에게, 직원은 총무처장에게 각각 인비로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자랑스러운 수원대인 포상은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, 직원은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하여 기획실로 추천한다.

③ 특별포상은 사안의 발생에 따라 교무처장과 총무처장이 추천 한다.

제7조(공적심사) ① 근속포상 및 공로포상은 부서장의 추천서에 의하여 교수인사위원회와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다.

② 자랑스러운 수원대인 포상은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실장이 추천하고 총장의 재가를 얻어 시행한다.

③ 특별포상은 사안의 발생에 따라 교무처장과 총무처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결정한다.

제8조(포상의 제한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의 대상자에서 제외한다.

1.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.
2. 직위해제 후 복직되어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.
3.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.

제9조(근속연수의 계산) ① 근속연수의 계산은 본교와 학교법인 고운학원 산하 교육기관에서 임용일로부터 계속하여 재직한 연수로 하되 매년 9월 25일 현재로 계산한다. 다만, 정년퇴임자의 경우에는 퇴임하는 일자로 계산한다.

② 휴직 및 정직기간과 임시직 기간은 전항의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10조(포상의 특례) ① 각종 경기대회 및 교육훈련에 우수한 성적을 얻은 개인 및 단체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 할 수 있다.

② 본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공로가 현저한 외부인사 및 단체에게는 감사장을 수여하고 기념품을 증여할 수 있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별지서식 제1호)

공 적 조 서

성 명	소 속	직 위	근속년수
주 요 경 력		과 거 포 상	
본 대학 발전에 기여실적			
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. 20 . . . 부서장확인 : (인)			